

2009년 신임 대법관 인선 기준에 관한 의견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 경제적인 약자의 권리옹호, △ 행정,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바람직한 대법관 선임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대법관 인선은 법원개혁과 인권보호 등에 남다른 면모를 보여준 이를 대법관으로 선임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기수 및 서열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인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습니다. 비록 최근의 신영철 대법관 인선의 경우에는 인선 직후 밝혀진 재판간섭 파문으로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많이 훼손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변화는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대법관 인선 또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하며, 인선기준에 대한 의견을 아래처럼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 정부 출범이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의수호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할 것임을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에 보여줄 수 있는 이를 대법관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 정의를 선언하는 기관입니다. 형식적 법이론에서 벗어나 실체적 정의를 선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국민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울러 법률을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단순히 풍부한 법조경력을 쌓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펼쳤거나 그러한 소신이 뚜렷한 인물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사법부가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형식적 법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권과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기소되지 않았을 수많은 평범한 시민과 사람들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사법부가 과거에 비해 더욱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권과 검찰권, 경찰권 등 국가공권력의 남용에 제동을 걸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과 올해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 조항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이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또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한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에 대해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구성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검찰권과 경찰권의 자의적 행사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위 사례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발생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자유, 정의라는 법정신에 입각하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의 사법부를 그 어느 때보다 열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 대법관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소신과 경험을 가진 이가 임명되어야 하며, 대법원이 그 같은 기능을 어느 때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에 보여줄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외부의 사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에

서 이해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지향하는 인물이 대법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기득권 유지와 외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역’을 구축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인 법관의 독립이 사법부의 관료적 구조 속에서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잘못 이해하여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 언론 등의 사법부 외부의 법원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토론, 사법부의 변화요청을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구성은 지난 수년 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연공서열 따라 승진한 법원장이 아니어도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춘 이들이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남성 일색이었던 대법관에도 자질을 갖춘 여성 법률가가 임명되었으며 현직 판사가 아닌 이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고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가 임명되는 등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대법관 구성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 부응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끌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청을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나 간섭으로 바라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사법부 발전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식일뿐만 아니라 실제 구시대적인 태도입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청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용되어 수 년 전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물꼬를 트고 있을 때조차 서울지역의 한 법원장이 퇴임사에서 이러한 변화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본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임 대법관에는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왜곡하지 않고, 대법관 구성을 비롯하여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과 개선요청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 제청되고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정성에서 의심받지 않는 인물이 대법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세력, 특히 권력집단과 특수한 관계를 맺는 등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을 주는 인물은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못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세력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함에 있어 소홀하지 말아야 할 대법관과 대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 동시에 공정성에 있어 한 치의 의심도 받지 않을 인물이 대법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